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동안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12조).

-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정부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피해자 추도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안 제24조).

II. 검토의견

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구성의 명확화 필요(안 제4조)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하는 5명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만으로는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반드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즉, “국회가 추천하는 5명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규정은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¹⁾. 이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1) 유사 입법례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항제2호에서도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 <u>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5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1. 다음 각 목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5명</u> <u>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u> <u>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u> <u>다. 나목에 따른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u> <u>2.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u>

나. 위원회 진상규명 조사방법 추가 규정 필요(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은 100여 년 전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관련 공식기록이 부족하여, 사건의 목격자·후손·연구자 등 민간의 증언과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위원회가 관계 기관뿐 아니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진상규명 업무의 객관성·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도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²⁾. 이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2) 유사 입법례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도 위원회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8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 한 <u>진술서</u>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 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 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 정보의 조회, 관련 자료· 물건의 제출 요구 ② (생 략) ③ 위원회로부터 <u>진실규명과 관련하여</u> 자료의 열람·제공 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 ----- -----. 1.----- -- <u>진술서 및 관련 자료·물 건의</u> ---- 2. ~ 3.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u>제1항제1호</u> <u>·제3호에 따라</u> ----- ----- <u>사람,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 체</u> 등은-----.

-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박 병 섭)